

학 교 급 식 공 급 업 자	① 상 호		② 사업자등록번호	
공급가액 명세(과제기간:)				
③ 학 교 명	④ 월 별	⑤ 공 급 가 액	⑥ 월 별	⑦ 공 급 가 액
	1		7	
	2		8	
	3		9	
	4		10	
	5		11	
	6		12	
	⑧ 합 계			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급식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귀하				
위와 같이 위탁급식을 공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.				
년 월 일 () 학교장 (서명 또는 인)				

작 성 요 령

이 증명서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해당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시기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.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

2.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

「소득세법」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